

대전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나1176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나11765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7가단20235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 담당변호사 이민호

피고, 항소인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변론 종결 2021. 6. 1.

판결 선고 2021. 6. 29.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7가단20235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6. 1. 24."을 "2016. 11. 24."로 경정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4. 체결한 매매계약을 88,167,9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167,9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의 '제2호증의 1 내지 4'를 '을 제2호증의 1 내지 4'로, 같은 행의 '제3호증'을 '을 제3호증'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6. 1. 24.'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2016. 11. 24.'로 경정하고, 제1심판결이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3항에 따라 이 법원이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이진

판사안영화

판사신순영

별지